

국 민 안 전 처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

기 관 명 영도구

내 용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,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이에 따라 영도구에서는 2014년 국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영도구 ○○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【표 1】과 같이 시행하였다.

【표 1】 ○○지구 급경사지 사업 추진 현황

공 사 명	사업비(백만원)			사업기간	도급업자	비고
	계	국비	지방비			
○○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	2,600	1,300	1,300	2015.02.27. ~2017.05.11.	○○종합토건(주) ○○○	

※ 자료 :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출자료 재구성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

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.

그러나 영도구에서는 붕괴위험지역 해소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구간 인근 화장실 리모델링 및 공사구간을 벗어나거나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은 도로를 재포장 하는 것으로 설계를 【표 2】와 같이 변경하여 예산 106,083천원을 보조금의 용도 외로 집행할 예정이다.

【표 2】 ○○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용도 외 사용 현황

(단위 : 천원)

공종	설계반영 (제경비 제외)		변경(B) (제경비 제외)		감액 (제경비 포함)		감액사유	비고
	수량	금액	수량(t)	금액	수량	금액		
계						-106,083		
공중화장실 리모델링	1	58,000	-	-	-1	-86,974	용도 외 사용	
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	1,000	9,978	-	-	-1,000	-19,109	용도 외 사용	

【그림】 ○○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용도 외 사용



조치할 사항 영도구청장은

[시정] 영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사업 용도와 다르게 집행예정 중인 10
6,083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, 사업추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